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31

발의연월일: 2020. 8. 18.

발 의 자:인재근·소병훈·허 영

송갑석 • 기동민 • 김원이

최혜영 · 최종윤 · 강선우

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흡연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은 규제하고 있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자동차 내 음주난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91조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운전자는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9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
	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
	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u>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④ 운전자는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
	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
	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
	는 행위를 한 자
<u>1.</u> ~ <u>5.</u> (생 략)	$2. \sim 6.$ (현행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와 같음)